

시특별방역대책기간 일방적 연장 가금단체 반발...피해보상 요구

생산자단체 의견 수렴없는 일방적 연장조치 3월 한달 준특방기간 분류...정책 완화해야

정부가 시(조류인플루엔자)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한 달간 연장하면서 가금단체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진행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인 시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 한국도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방역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가금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가금단체들은 코로나-19로 범부처가 합심해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초비상 시국에 철새 서식을 이유로 시특별방역대책기간을 연장한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특히 2018년 3월 17일 이후 국내에서는 2년 넘게 시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강화된 예찰검사 시스템에 따라 실시중인 철새에 대한 시검사에서도 고병원성 시 항원의 검출은 단 한 차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국내 시 발생 위험성을 높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이유를 달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가축방역심의회를 서면으로 진행하면서도 서면심의 요청서를 지난 2월 26일 당일 16시에 보내놓고 18시까지 회신을 요구하는 방역정책국의 행태를 탁상행정과 졸속행정의 끝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가금단체들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자료도 없이 그저 추측성으로 시특별방역대책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방역기간 연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가금단체들은 시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과 방역인력의 소모는 물론 그로 인한 피해는 가뭇이나 불황을 겪고 있는 가금산업에 직격탄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무의미한 시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가금농가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하게 보상할 것과 함께 시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필요한 역학조사 인력과 예산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오리협회의 한 관계자는 “직접적인 방역대책 대상인 생산자단체와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인 방역연장 계획 수립을 반대한다”며 “특별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월 한 달은 준특방기간으로 분류해 농가와 계열사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 내용과 결과 및 한국오리협회의 의견을 자세히 정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 내용

심의 안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0. 2. 29일에서 3.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

- 최근 중국·대만 등 주변국 AI 발생 증가, 철새 북상 이동에 따른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연장하여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취약대상 방역관리 강화 지속

* (당초)'19.10~'20.2월(5개월)→(연장)'19.10~'20.3월(6개월)

심의안건 설명

1. 현황 및 전망

(철새) '20.2월 전국 92만수 서식(전년 동기 71만수 대비 29% 증가), 국내 야생조류 AI 항원(H5형) 지속 검출('19.10월 이후 21건)

(해외) 최근 중국·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에서 AI 발생 급증

* '20. 1월 이후 주변국 총 63건(중국5, 대만40, 베트남18) 발생, 전년 동기(9건)보다 7배 증가

(전망) 3월까지 철새가 다수 서식하고 이동이 증가하며 최근 주변국의 AI 지속 발생 등 발생 위험성이 상존해 방역 강화 유지 필요

2. 그간 주요 조치사항

(차량통제·소독) 철새도래지·가금농가에 축산차량 출입금지외 소독 강화

- (도래지) 축산차량 주변도로 진입금지·GPS 관제(84개소), 매일 소독
- (농가) 축산차량 농가 진입통제, 종계·종오리 농가 출입차량 통제·소독 강화, 농가 진출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확인 등 소독 강화

(예찰·검사) 철새 검사 확대('19.10월 이후 20천건, 작년 동기 대비 26%↑), 취약 축종(종오리·종계·산란계·전통시장 거래가금 등) 검사 강화(이상 없음)

(현장점검)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밀집단지(산란계 10개소),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을 정해 소독 등 방역실태 지속 점검

- 방역취약 오리농가(102호)는 3단계 검증(제열사→지자체→농식품부) 후 입식 허용

(사육제한) AI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가 207호(약 300만수) 대상 추진

(홍보) 브리핑, 보도자료(10월 이후 15회), 문자, SNS 등 방역수칙 홍보

3. 3월 이후 방역 추진계획

(차량 통제) 철새 주요 북상시기인 3월에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진입통제*와 매일 GPS 관제, 가금농가 진입금지 등 유지

- 차량 통제·소독 강화를 위해 밀집단지(산란계 10개소) 통제초소 운영, 가금 종축장 차량 통제 강화 등 조치도 지속 시행

(예찰·검사) 철새 개체수 증가 및 항원검출 도래지 위주 예찰 강화와 종오리·전통시장 출하가금(특수가금 포함) 등 검사 강화 유지

(현장점검) 철새도래지·주변농가, 취약대상 등 방역실태 지속 점검

- AI 방역관리카드(KAHIS, 전산)를 활용해 농가 단위 점검 이력·결과 관리

- 입식 사전 신고 의무화*(2. 28~)에 따라 농가 홍보와 점검 강화

*가축전염병예방방법 개정 시행, 축산법상 허가대상 닭·오리농가는 입식 7일 전 시군에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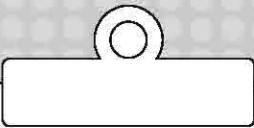
- 사육제한 농가 입식 시에는 기존 방역취약 농가와 같이 입식 전에 3단계 현장점검*(농가→지자체→검역본부) 실시

*진출입로·축사 둘러 생석회 도포, 전실, 야생조류 차단망, 소독시설 작동 여부 등

(전통시장) 가금(초생추·중추) 유통 증가 시기인 5월까지 방역관리 강화

- 판매 가금은 농장출하 전 전체 검사, 전통시장 가금 판매장소 지정 운영(신고·승인), 전담 공무원 점검, 일제 휴업·소독*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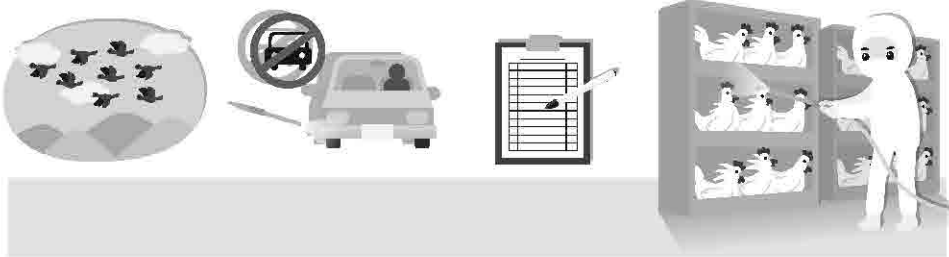
*일제 휴업·소독날 운영은 산가금 유통 증가로 3월에는 월 2회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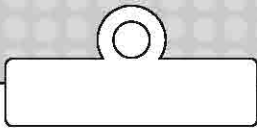


S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비교표)

구분	'19.10월 ~ '20.2월	'20.3월 이후
축산차량 통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축산차량 출입금지(우회) * 고위험 20개소, 중위험 59개소, 저위험 5개소	유지
	(종축장) 종계·종오리 축산차량 출입통제 * 시군구에 출입 차량(사료·분뇨·알·왕겨) 등록, 매주 출입계획서 제출, 농가진입전 3단계 소독 실시	유지
	(가금농가) 축산차량 출입금지 원칙 설정 * 부득이한 경우 지정차량 운영, 3단계 소독 후 진입	유지
	(밀집단지)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통제초소 운영 * 오리·산란계 농가 통제초소 운영(경기 62호, 전남 14호)	유지
	(환적장) 종오리, 산란계 환적장 운영	유지(종오리) * 산란계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운영
소독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 매일 소독	변경 운영 * 고위험·중위험은 매일, 저위험(5곳 제외)은 주 3회 이상
	(거점소독시설) 전국 거점소독시설 운영 * ASF 대응(심각단계)과 연계	유지 * ASF 대응(심각단계)과 연계
	(취약대상) 임대농가, 메추리농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경작겸업농가 등 매일 소독 * 지자체에서 추진실적 매일 또는 주 1회 보고	유지 * 지자체 추진실적 보고 간소화
	(가금농가) 진출입로 축사 사이 등에 생석회 도포	유지
야생조류 가금농가 예찰·검사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 * 전국 96개 철새도래지 대상, 10월~3월 예찰·검사 강화	유지 * 4월부터는 상시 예찰검사 계획에 따라 운영
	SI 항원(H5-H7형) 검출 시 선제적 방역조치 * 반경 10Km 이동통제, 예찰·검사·소독, 통제요원 투입 등	유지
	전국 철새 서식 현황 조사(월 1회, 환경부 협조)	유지
	(도축장) 출하농장 매일 SI 검사 실시 * 특별기간 강화: 오리(10%·30%), 주 1회 환경검사	변경 운영 * (닭·오리) 출하농장의 10%, 주 1회 환경검사
	(취약축종) 종오리·종계·오리·산란계 예찰·검사 강화 * (종오리) 2주 1회 검사, 산란기록 매일 시군, 주 1회 농식품부 제출 * (종계·산란계) 월 1회 검사, 출하시 마다 검사 * (오리·산란계) 전화 예찰 강화(월 1회→주 1회)	변경 운영 * 종오리 산란기록 주 1회 농식품부 제출을 제외하고 현행 유지(필요시 요청)
	(오리·노계(산란계·종계)) SI 검사 후 이동 허용	유지

구분	'19.10월 ~ '20.2월	'20.3월 이후	
현장점검	방역취약 오리농가(102호) 3단계 입식 점검 * 계열사 → 지자체 → 검역본부 점검 후 입식 허용	강화 * 사육제한 농가 포함	상시점검 전환 * 동절기 대비 전국 가금 농가 일제점검 추진 예정(4월~)
	산란계 밀집단지 주1회 점검(검역본부)	변경 운영(월 2회)	
	육계·육용오리 일제 입식 출하 점검	변경 운영 (오리 유지)	
	GP센터, 분노비료업체, 월 2회 이상 점검	변경 운영 * 분노비료업체 유지	
	방역관리책임자 2주 1회 농가(376호) 점검		
	가금 입식 전 신고제 * 입식 1주 전 자체 점검 후 지자체에 신고, 오리는 현장점검	변경 운영(의무화) * 오리는 현장점검 유지	
가금농가시 방역관리카드 운영	유지		
전통시장	(휴업·소독) 월 2회*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 매월 2, 4번째 수요일	유지(3월 2회, 4월부터 1회)	
	(검사) 전통시장 출하 가금 시 검사 후 이동 허용	유지(연중)	
	판매장소 지정, 매주 점검, 농협 소독지원 강화 등	강화(~5월) * 판매 전 지자체 신고 및 승인, 전담공무원 점검 등	
전담 공무원제 (정기 점검, 예찰 등)	시 반복 발생 시·군(17개소) 전담제(검역본부)	유지	
	가금 전업농(4,843호), 취약농가(2,215호) 전담제(지자체)	변경 운영 * 전통시장, 취약농가 전담 공무원제 유지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 결과

심의 안건

안건대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0.2.29일에서 3.31일까지로 1개월 연장

동의	부동의
	✓

한국오리협회 의견



- ☑ '18/'19년/'20년도 시 비발생에도 불구하고 방역대책이 지나치게 강화
- ☑ 직접적인 방역대책 대상인 생산자단체와 의견수렴 과정없이 일방적인 수립반대
- ☑ 코로나-19 확산,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특별방역기간 연장은 산업에 부담만 가중
- ☑ 특별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월 한 달은 준특방기간으로 분류하여 농가, 계열사에 부담을 주는 정책완화
- ☑ 사육제한 농가 등 오리의 입식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 기타 도축장, 농가 등에 대한 각종 검사 강화로 침체된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